

제 694 호
1979. 1. 9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경상권
편집 : 문화공보관 김인봉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말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302 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 세과 세면제 조례 중 개정 조례	3
제 1303 호 :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시 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	4
◎ 고 시	
제 18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5
제 19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6
◎ 공 고	
제 9 호 : 품질검사 결과 불량격상 품수 거 및 파기 명령 (처분) 공고	6
◎ 사 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218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79년 1월 9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302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및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세면제대상) 부가가치세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발 교부받은자 (당해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교부받은자를 포함한다) 와 공공단체

또는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이 분양을 조건으로 1가구당 전용면적 20평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주택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집단주택) 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건물 (토지제외) 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주택의 준공후 1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
- 2.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건축한 때
- 3. 법령 또는 그에 의한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한 때

제 3 조 및 제 4 조를 삭제하고, 제 5 조를 제 3 조로 하되 "구청장"을 "구청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제 6 조를 제 4 조로 하되 제 1 항중 "제 3 조"를 "제 2 조"로 한다.

제 7 조를 제 5 조로 한다.

쿠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79년 1월 9일

④ 서울특별시조례제 1303 호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세법 제 7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세면제대상)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

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량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 공고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 계획에 의한 인가조건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그에 의한 조례에 위반하여 건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재개발사업 시행자
2. 사업시행자로 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소유자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①이 조례에 의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

제 4 조 (면제신청) ①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그 사업의 계획 및 완료사항을 과세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③ (폐기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조례 제 846 호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구역내 건물에 대한 시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4)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당시 부칙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들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6

서울특별시 장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고 동 학 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중구정동 1-8 일대	19,805㎡ (5,991평)	기존 학교 및 수가

* 별첨 도면표기와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19 호

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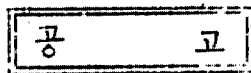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1.17
서울특별시장

○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수도	성동구구의동 160-1 일대	211,509 ㎡ (63,981.2평)	
변경	"	"	202,987 ㎡ (61,403.2평)	다너엘학원(정신박약아, 신체장애학원)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9 호

품질검사결과불합격상품수거 및 파기명령(처분)공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 결과 불

합격 상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 및 파기명령(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함.

1979.1.17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업체 및 품목					
업체명	소재지	품명	규격	불합격항목	처분내용
제일비누	영등포구신정동 274-1	고형색탁수	셀콤 I 4호	중량	수거및파기명령
태양유지	양평동 3가 78	"	"	물분용성분, 중량	"
동성타이어	동대문구용두동 127	제성타이어	900X20	인장강도신장율	"
서울공구	종로구예지동 96 길 5번 선	벤지	200 %	치수변형경도 기호 미표시	"
			150 %	경도가호미표시	"
			140 %	치수, 경도	"
			200 %	치수자름세 영구변형경도	"
해동공구	송구쌍림동 146-11 번 동 근	라디오지	140 %	치수기능영구 변형경도	"
한일브레이크	영등포구당산동 6가 333-2 이종구	자동차용 클러치레이싱	시보래 8본	두께및 미표시	"
			포드 750	"	"
			시보래 2.5본	"	"
			시보래 1700	미표시	수거명령
동양전기	강남구중남동 281 길 백 주	전전지	CM	두께및 미표시	수거및파기명령
			AAM	내 누액성	"
			4 DM	차 수	"

2. 수거및파기기간 : 79.1.17-79.2.16 (1개월간)

3. 처분사유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미달

사 령

◎ 1979.1.10

대 구 시 최 경 한
지방행정주사보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하수시설 1과 근무를 명함.

◎ 1979.1.11

천 호 출 장 소 박 용 용
시민과장지방행정사무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